

## 제 3절 신용장

### 1. 신용장의 의의

####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출대금지급에 대한 은행의 약속서로 신용장을 발행한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여러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내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를 말한다. 수입자는 거래은행에 자신의 신용보증을 위한 증서를 요청하여 이것을 수출업자에게 보내고 이 신용장에 근거를 두고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신용을 보증하게 되므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안심하고 수입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매입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수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일치되고 약정기간 이내에 신용장 상에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약약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신용장을 수취하면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대금회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2) 신용장의 효용

신용장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결제수단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효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1) 수출자에 대한 효용

- ① 수출대금 회수보장 :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물품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 회수가 확실하다.
- ② 매매계약 이행보장 : 신용장이 개설되면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어 거래가 확정된다.

③ 외환변동위험 회피: 수입국의 외환시장 악화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수출대금 신속회수 : 물품이 선적되면 수입자 소재지의 은행이 신용장을 매입하므로 즉시 수출대금 회수가 가능하다.

⑤ 무역금융 활용가능 : 입수한 신용장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활용하여 자기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수출이 가능하다.

## 2) 수입자에 대한 효용

① 상품인수 보장 :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품인수시기 예측가능 : 신용장에는 최종선적일과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③ 대금결제 연기효과 : 선적서류보다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선취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기간 동안 대금결제를 연기 받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기한부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환어음에 대한 인수와 함께 선적서류를 찾을 수 있으므로 수입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일에 수입대금을 상환할 수 있어 자기자금이 부족하여도 수입이 가능하다.

## 2. 신용장의 분류

신용장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분류기준을 갖는다. 신용장의 사용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신용장은 비상업적 거래용이며, 무역거래의 결제를 위해 사용되는 신용장을 통칭하여 상업신용장(Commercial Credit)이라 한다.

상업신용장은 다시 무담보신용장(Clean L/C)과 화환신용장(Documentary L/C)으로 구분한다.

무역대금의 결제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화환신용장이다. 화환신용장은 수출업자가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의 지급, 인수 매입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물권증서로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의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즉,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첨부되어 있는 운송서류가 일치될 경우에만 신용장개설은행이 그 어음의 매입과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이다.

반면 무담보신용장은 선적서류의 첨부를 지급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송하고 은행에는 환어음만 제출하여 대금회수를 한다.

이러한 무담보신용장은 운임, 보험료나 수수료 등의 무역외거래의 결제에 주로 이용된다.

통상적인 상업신용장의 종류는 <표4-3>와 같다.

<표 4-3> 상업신용장의 분류

상업신용장	무담보신용장	
	화환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확인신용장과 무확인신용장
		상환정구가능신용장과 상환정구불능신용장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특수신용장	회전신용장
		내국신용장
		전대신용장

### 3. 신용장의 구성요소

#### 1) 신용장통일규칙 (UCP;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3년 화환신용장을 이용한 국제상거래에서 국가마다 다른 거래제도와 관습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 신용장의 통일규칙이다.

2006년까지 6차례 개정되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UCP 600”은 총 3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신용장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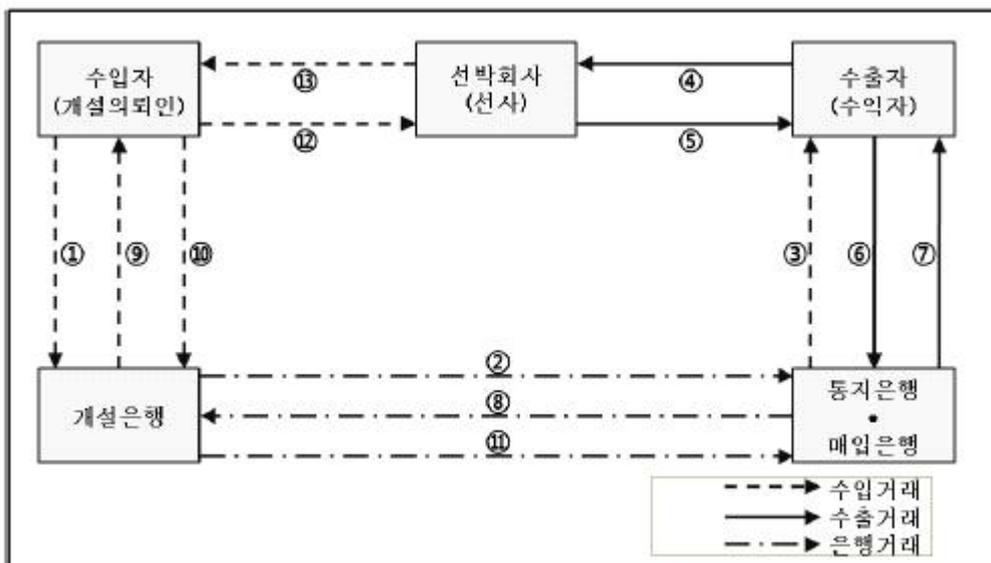
신용장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권고한 표준양식에 기본을 두고 각 은행이 적절하게 구성하여 발행하고 있다. 신용자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구성항목은 대개 공통적 항목이 많으며, 일정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의 주요 구성요소는 <표4-4>와 같다.

### 4.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수입자와 수출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결제를 신용장방식에 의하기로 합의하게 무역거래는 신용장을 이용하여 거래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절차와 결제과정을 살펴보면 각각 <그림 4-1>과 <표4-5>과 같다.

<표 4-4> 신용장의 주요 구성요소

1)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① 개설은행명(Issuing Bank) ② 수익자명(Beneficiary) ③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 ④ 신용장 금액(Amount of the Credit) ⑤ 발행일자(Date of Issue) ⑥ 신용장 유효기간(Expiry Date) ⑦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⑧ 신용장 번호(Credit Number) ⑨ 신용장 통지번호(Advice Number) ⑩ 통지은행명(Advising Bank)
2) 환어음에 관한 사항	① 환어음 발행인(Drawer) ② 환어음 지급인(Drawee) ③ 환어음의 지급기일(Tenor) ④ 환어음 표시의 문구
3) 상품에 관한 사항	① 상품명(Named the Covering Commodity) ② 상품의 수량(Quantity) ③ 상품의 명세(Description) ④ 상품의 단가(Unit Price) ⑤ 가격조건(Price Term)
4) 운송에 관한 사항	① 선적지(Point of Shipment) ② 도착지(Point of Destination) ③ 선적일자(Shipping Date)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⑤ 환적(Transshipment)
5) 서류에 관한 사항	①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표시 ②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③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⑤ 운송서류 제시기간(Period of Presentation) ⑥ 운송서류 우송지시문언
6) 기타 사항	①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② 개설은행의 지급약약문언(Engagement Clause) ③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④ 신용장번호표시 요구문언 ⑤ 대입은행에 대한 지시문언 ⑥ 통지은행의 표시



<그림 4-1> 신용장에 의한 거래과정

<표 4-5> 신용장에 의한 결제절차

① L/C개설	수입자가 개설은행에서 L/C 개설
② L/C통지	L/C 개설 후, 개설은행에서 통지은행으로 L/C 통지
③ L/C통지	통지은행에서 수출자에게 L/C 통지
④ 선적	수출자는 선사에게 화물 인도
⑤ B/L인도	화물 인수 후, 선사는 수출자에게 B/L 인도
⑥ NEGO	수출자는 매입은행에게 선적서류(B/L포함)를 제출하고 대금지불요청
⑦ 대금결제	매입은행은 L/C와 선적서류 확인 후, 수출자에게 대금지불
⑧ 추심	매입은행은 L/C와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발송하여 대금지불요청
⑨ 상환청구	개설은행은 L/C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상환 요청
⑩ 상환	수입자는 개설은행에 대금상환하고 선적서류 인수
⑪ 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게 대금 지불
⑫ B/L제시	수입자는 선사에 B/L 원본을 제시하고 화물인도 요청
⑬ 화물인도	선사는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 본선에서 화물인도

## 제 4절 무역대금 결제

무역거래에서의 결제방식은 크게 신용장에 의한 결제와 무신용장방식의 결제로 구분한다. 신용장에 의한 방식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통한 결제방식을 말하며, 무신용장 방식은 다시 추심에 의한 방식과 송금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 1. 화환신용장 결제방식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은 개설은행이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선적서류의 첨부를 조건으로 지급, 매입을 약속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이다. 화환신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은 다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일람불신용장(Sight Credit)방식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이 일람불(요구불)인 신용장이다. 따라서 개설은행에 환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대금이 지불되는 방식이다.

#### (2)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방식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의 기간이 일람불이 아니라 기한부인 신용장이다. 대금의 결제는 어음상의 약정기간(Usance)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다. 결제대금이 부족한 수입자는 기한부신용장을 발행함으로써 약정기간동안 수입품을 매각하여 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 (3) 전대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Credit)방식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에게 선적서류를 받기 전에 미리 수출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증한 신용장이다. 수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출자가 신용장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 부터 수출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아 수출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방법이다.

## 2. 추심 결제방식

### (1) 추심방식의 의의

신용장 없이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은 은행의 지급확약이 없으므로 상호 성실한 계약이행에 의존하여 결제가 진행된다. 수출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물품을 먼저 선적하고 화환추심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은행을 통해 수입자로 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란 수출자를 대신하여 수출지에서 수입자 거래은행에게 대금지급청구서(환어음)와 선적서류(선하증권·보험증권·상업송장 등)를 발송하는 은행이며, 추심은행(collecting bank)은 수입자에게 수출자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이다. 추심은행과 추심의뢰은행은 수출대금을 추심하거나 송금해주는 역할을 할 뿐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서로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음발행은 대금지급과 물품인수의 근거로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 (2) 추심방식의 유형

이 방식은 결제시기에 따라 D/P (Document against Payment:지급인도조건)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인수인도조건)로 구분한다.

#### 1) 지급인도조건방식(D/P;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입자가 대금지급을 해야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추심의뢰은행의 지시대로 대금을 송금한다. D/P는 일람불(요구불) 거래방식으로 추심은행과 수입업자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현금과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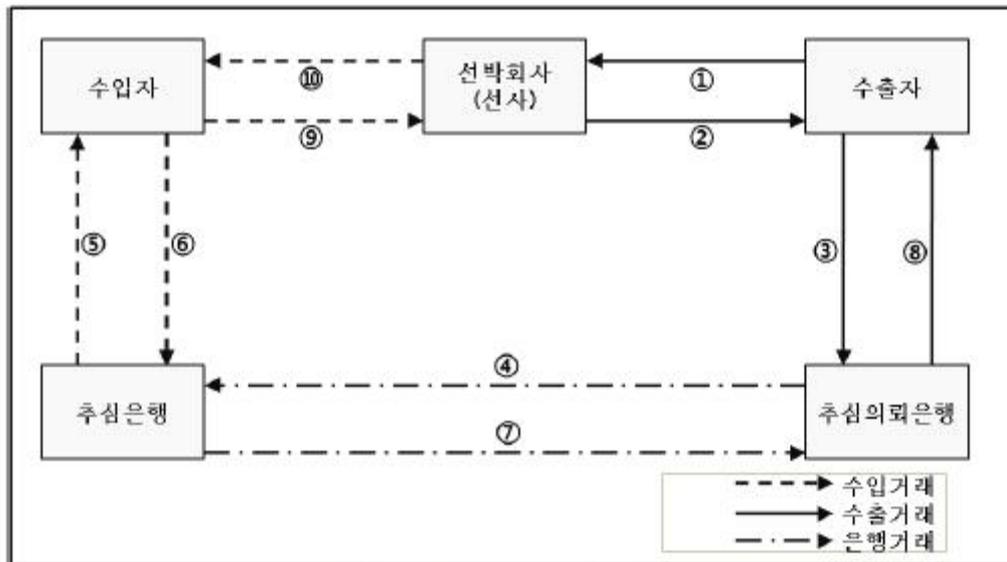
이 방식은 수출자가 선적완료 후,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을 거쳐 수입자의 추심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요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일람지급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 2) 인수인도조건방식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는 수입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인수하면서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업자가 'accepted'라고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게 되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결제시기로 볼 때 D/A는 기한부(Usance)거래이고 이고 D/P는 일람불 거래에 해당한다.

## (3) 추심결제방식의 거래절차

D/P 또는 D/A에 의한 거래과정과 결제절차를 살펴보면 각각 <그림4-2>, <표4-6>과 같다.



<그림 4-2>D/P 또는 D/A에 의한 거래과정

<표 4-6> D/P 또는 D/A에 의한 결제절차

① 선적	수출자는 선사에게 화물 인도
② B/L인도	화물 인수 후, 선사는 수출자에게 B/L 인도
③ 추심의뢰	수출자는 추심의뢰은행에게 선적서류(B/L포함)를 제출하고 추심의뢰
④ 추심의뢰	추심의뢰은행은 선적서류를 추심은행에 발송하여 추심의뢰
⑤ 서류제시	추심은행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D/P 또는 D/A 요청
⑥ D/P,D/A이행	수입자는 추심은행에게 D/P 또는 D/A하고 선적서류 인수
⑦ D/P,D/A통지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수입자의 D/P또는 D/A 사실통지
⑧ D/P,D/A통지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입자의 D/P또는 D/A 사실통지 (대금지급(D/P)시에는 대금결제)
⑨ 서류제시	수입자는 선사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화물인도 요청
⑩ 화물인도	선사는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 본선에서 화물인도

### 3. 송금 결제방식

#### (1) 송금방식의 의의

송금을 통한 결제방식은 추심방식과 같이 무신용장방식이다.

송금방식에서는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고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에 비하여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금융비용이 적게 들고 결제과정이 단순하다. 반면에 거래에서 은행의 지급약속이 없으므로 대금회수 보장이나 상품입수 보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방식은 거래 당사자 간에 깊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본사와 해외지사간의 거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추심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나, 송금방식은 수입자로 부터 결제행위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신용장방식이나 추심방식과 달리 송금방식은 준수해야할 국제규범이 없기 때문에 거래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거래조건을 변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 (2) 송금의 형태

한편 송금거래에 사용되는 송금환의 형태는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 등이 있다.

### 1) 송금수표(demand draft)

은행수표가 보편적을 이용되며, 수입자가 거래은행에서 교부받아 수출자에게 송부하고, 수출자는 지급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다.

### 2)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

수입자가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위탁하고 수출자에게 지급해주도록 요청하고 수입자 거래은행은 수출자 거래은행으로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지급지시서를 접수한 지급은행은 수출자에게 통보한 후, 수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며, 지급지시를 한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예금계정에서 대금을 인출하게 된다.

### 3) 전신송금환(T/T; telegraphic transfer)

우편송금환과 방법은 동일하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를 우편 대신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신속하게 통보되고 즉시 결제되므로 수출자는 전신송금환을 선호하게 되며, 반면 수입자는 전신료 부담을 갖게 된다.

## (3)송금방식의 유형

송금방식의 결제는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한다.

### 1) 주문불(CWO; Cash with Order)방식

이 방식은 사전송금방식으로서 선불(CIA;Cash in Advance)방식이라고도 한다. 미리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수출자가 선적을 하지 않는 방식이며,

수출자가 대금회수를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다. 지불수단은 은행수표 또는 전신송금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자의 신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2) 일부선불(Advance Money)방식

수입자는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잔금은 선적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방법이다.

## 3) 누진불(Progressive Payment)방식

수입자가 무역물품의 선적 진행단계에 따라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적이 완료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주로 선박, 기계류, 설비 등과 같이 제작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경우에 주문 체결시 1/3, 선적시 1/3, 화물이 도착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 4) 연불(Deferred Payment)방식

선적서류가 수입지에 도착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약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이 지급되는 방법이다. 수입자는 대금지급전에 먼저 상품을 판매하여 수입대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수출대리점이거나 또는 수입자의 신용이 확실하고 수출대금의 회수가 시급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 5) 현물상환불(COD; Cash on Delivery)방식

수입물품이 수입지에 도착하면 선적서류를 가진 수출자 대리인과 수입자가 함께 수입통관을 한 후, 수입자가 직접 품질검사를 하여 물품과 상환하여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해가는 방식이다. 귀금속 등의 고가품과 같이 사전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되며, 대금회수의 위험은 없으나 수입자가 인수를 거절하면 물품을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다른 구매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6) 서류상환불(CAD; Cash against Documents)방식

현물 대신에 B/L 등의 선적서류와 상환하여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출자가 선적 후, 수입자 대리인에게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수입자 대리인이 수출지에서 제품의 제조과정이나 품질을 선적 전에 확인할 수 있다.

#### 7) 상호계산(Current Account)방식

본사와 지사 등 무역거래 당사자가 서로 특수한 거래관계에 있을 때, 무역물품을 선적할 때마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장부에 기입하여 두었다가 일정기간마다 서로 지급 금액을 상쇄하고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결제(Open Account)를 의미한다.

무역거래가 서로 빈번하여 매번 결제를 하면 금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다.